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689853	
등록번호	110111-6898534	
상 호	주식회사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 .
공고방법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2개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할 경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4,000,000 주	금 120,000,000,000 원	2020.09.22 변경
보통주식	8,000,000 주		2020.09.22 등기
기명식종류주식	16,000,000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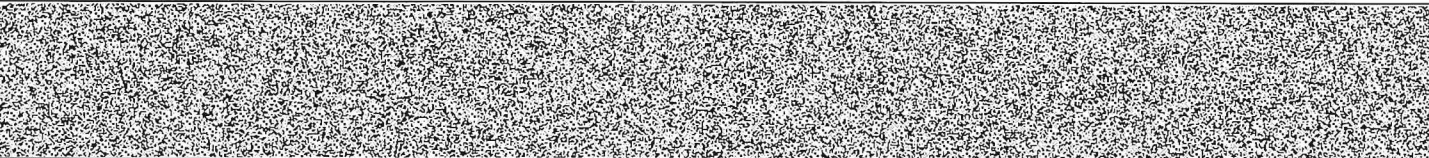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부동산의 개발사업
- 부동산의 임대업
-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 신택이 종료된 때에 신택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택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감독이사 김성석 810826-*****			
2021년 03월 30일 취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2024년 03월 29일 중임	2024년 04월 02일 등기		
감독이사 정환수 740322-*****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689853
------	--------

2024년 03월 29일 취임 2024년 04월 02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기명식종류주식

1. 회사는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고, 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1.25%의 비율(이하 “우선배당률” 이라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연 1.05%의 비율로 배당한다. 이와 같이 매 결산기에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균등 배당한다.

3. 어느 영업년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4.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종류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주금 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 수익률을 연 2.00%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위 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을 연 3.69%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1호부터 2호까지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안분 분배한다.

2020년 02월 05일 변경 2020년 02월 14일 등기

기명식종류주식

1. 회사는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고, 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1.25%의 비율(이하 “우선배당률” 이라한다)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연 1.05%의 비율로 배당한다. 이와 같이 매 결산기에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균등 배당한다.

3. 어느 영업년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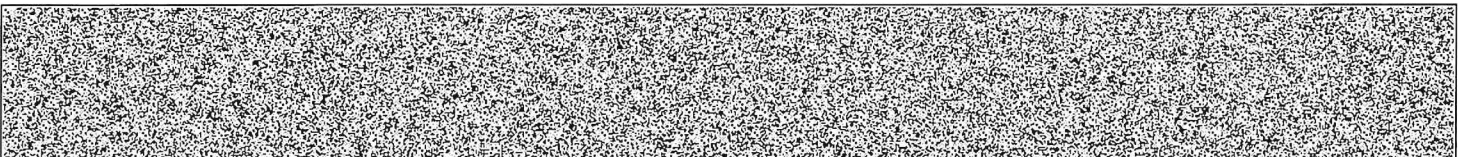
4.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종류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주금 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 수익률을 연 2.00%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위 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을 연 3.69%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1호부터 2호까지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안분 분배한다.

2020년 09월 14일 변경 2020년 09월 22일 등기



등기번호	689853
------	--------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해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18년 10월 1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년 10월 17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4년 0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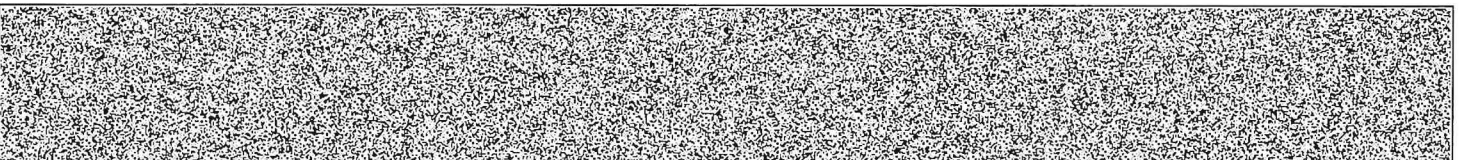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030004360105011410041200325180948G6N1A1M1E0E1H1 1

발급확인번호 8533-AAXQ-LAGI

발행일:2024/04/15